

변경 대비표

-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적격 TDF205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- 변경 사항: ①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
 - 변경 전 : 트러스톤 TDF205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 - 변경 후 : 트러스톤 적격 TDF205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- 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③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효력발생일 : 2026. 4. 1.
- 변경 내용

구분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표지			
집합투자기구 명칭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유의문구 삭제	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인 “트러스톤 장기채권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”을 설정한 후 6 개월 이 되는 날에 해당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각각 15 억원 미만 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 투자업자가 운용하는 “트러스톤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[채권]”, “트러스톤글로벌채권증권모투자신탁[채권-재간접형]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제외)	(삭 제)

요약정보



집합투자기구 명칭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 자산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 자투자자산탁[혼합-재간접형]
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	[투자 전략] <생략>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 주식 및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재산의 80% 이하로 투자하며, 목표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2050 년 이후로는 투자신탁재산의 40% 이하로 운용합니다.	[투자 전략] <생략> - 이 투자신탁은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 5-23 조의 2 1 호부터 8 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의 비중을 2050 년 1 월 1 일(투자목표시점) 이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이상으로 하고, 2050 년 1 월 1 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60 이상으로 운용합니다. - 또한,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100 분의 80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 분의 80 이내로 합니다.
투자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6. 2. 27. 기준
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6. 2. 28. 기준

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 신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자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자 자산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 자투자자산탁[혼합-재간접형]
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<신 설>	2026.4.01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변경 전: 트러스톤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변경 후: 트러스톤 적격 TDF 2050 증권자투자신탁[혼합-재 간접형]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[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연혁]	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	<신 설>	2026.4.01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변경 전: 트러스톤TDF 2030/2040/2050증권자투자 신탁[혼합-재간접형] 변경 후: 트러스톤 적격 TDF 2030/2040/2050증권자투자 신탁[혼합-재간접형]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2. 28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가. 운용전문인력 [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운용전문인력]	최근 기준으로 기재 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	-	<u>2026. 2. 28. 기준</u> 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 자신탁[주식-파생형] 부책임운용역: 손주섭
5. 운용전문인력 나.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최근 기준으로 기재	-	<u>2026. 2. 28. 기준</u>
5. 운용전문인력 다.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[이 투자신탁이 투 자하는 모투자신탁 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]	최근 3 년 경과내역 삭제	<u>트러스톤 ESG 레벨업 증권모투 자신탁[주식]</u> <u>책임운용역: 한규민</u> <u>(2021.1.29~2022.10.06)</u> <u>책임운용역: 이태하</u> <u>(2022.10.07 ~ 현재)</u> <u>부책임운용역: 이태하</u> <u>(2021.01.29~2022.10.06)</u> <u>트러스톤 멀티에셋 인컴 증권모 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</u>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

	모투자신탁 부책임 운용역 추가	부책임운용역: 강제혜 (2022.06.03~2023.03.02) <신 설>	트러스톤 인덱스알파 증권모투 자신탁[주식-파생형] 부책임운용역: 손주섭 (2026.02.06 ~ 현재)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라. 모자형 구조	자투자신탁의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 2050 증권자투 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적격 TDF 2050 증권 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 침 및 수익구조 1-2)세부 투자 전 략	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 반영 매 5년 단위별(목 표시점 이후 기간도 포함) 위험자산(주 식 등)과 안전자산 (채권 등)의 비중을 상세히 표시	<별첨 1> 참조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 주 식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통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투자신탁재산의 60% 이하로 투자하며, 목표시 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점차 축소하여 2050년 이후로는 투자신탁재산 의 40% 이하로 운용합니다. <신 설> <신 설>	<별첨 1> 참조 이 투자신탁은 「금융투자업규정 」 제 5-23 조의 2 1 호부터 8 호 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 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 권을 포함)의 비중을 2050년 1월 1일(투자목표시점) 이전에 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 의 20 이상으로 하고, 205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 분의 60 이상으 로 운용합니다. 또한,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 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의 투자한도는 주 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 의 100 분의 80 이내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 분의 80 이내로 합니다.

			본 집합투자기구는 「퇴직연금감 독규정시행세칙」상의 적격 TDF 인정요건에 부합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동종유형 총보수 최근 기준으로 기재	-	2026. 2. 27. 기준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.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	1)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: 별도의 과세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(특약에 따라 원 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)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. 다만, <u>투자신탁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시 원천징수의무자(판매회사)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. (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)</u>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, 보유,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, 등록세,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.

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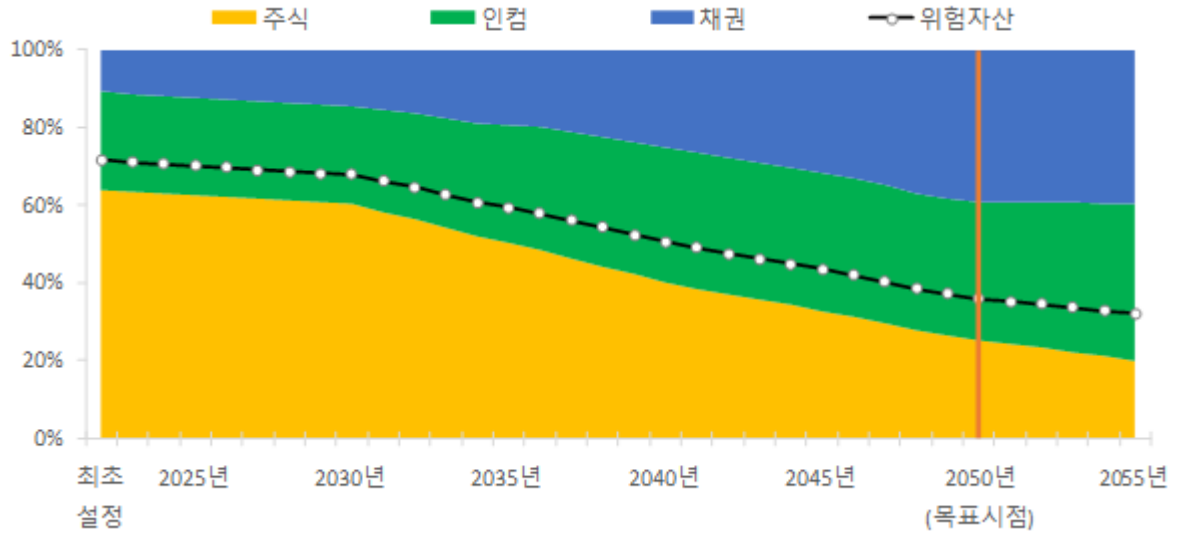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 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 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	트러스톤 TDF2050 증권자투 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	트러스톤 <u>적격</u> TDF2050 증권 자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

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. 회사 개요	최근 기준으로 기 재	-	<u>2026. 2. 28. 기준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 년도 요약 재무내용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제26기(2023.12.31)</u> <u>제25기(2022.12.31)</u>	<u>제27기(2024.12.31)</u> <u>제26기(2023.12.31)</u>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	최근 기준으로 기 재	-	<u>2026. 2. 28. 기준</u>

※ 별첨1

<변경 전>



<변경 후>

